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365
----------	-----

제출년월일 : 1998. .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에 입주영농을 위한 정착마을을 조성함에 있어 마을조성을 원활히 추진하고 입주자 선발 및 분양방법등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입주영농 추진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안 제3조 제 1항)
2.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안 제5조 제1항)
3. 입주자 선발은 공개적으로 선발하고 사전에 입주자의 자격요건,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발요강을 공개 하여야 함.(안 제10조 제1항)
4. 입주 신청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면접등의 방법으로 엄격하게 선발하여야 하며 심사는 비공개로 함.(안 제 11조)
5. 주택용지의 분양시기 및 분양방법 , 분양가격이 포함된 분양계획과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함(안 제 12조)

파주시동파리

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에 조성되는 동파리 정착마을(이하 “정착마을”이라 한다) 조성과 입주영농대상자 선발 및 운영, 관리를 위한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착마을 조성에 관련된 주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착마을 입주자 선발에 관한 사항
3. 정착마을 택지분양 방법 및 공급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4. 정착마을 운영규정 및 입주자 관리 규정
5. 기타 정착마을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2. 육군제 1사단 작전참모, 관할 기무부대장, 파주경찰서 보안과장
3. 시 의원과 민통선북방지역에 연고가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는 자

제4조(실무위원회 설치)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착마을조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등)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위원장이 위촉또는 임명한다.

1. 기획감사담당관,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주택과장, 지적과장, 군내출장소장
2. 육군 제1사단 관계관, 관할 기무부대 관계관등 정착마을조성에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실무담당자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조정,협의 한다.

- 1.위원회 심의에 앞서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항
- 2.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
- 3.정착마을조성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실무적인 협의 사항
- 4.기타 정착마을조성 등에 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의 운영에관한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정착촌 입주가 완료될 때 까지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으로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통할 운영한다.

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든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를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건설과장으로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지역개발계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입주자 선발) ① 위원회에서는 정착마을 입주자를 선발할 경우에는 공개로 선발하되 사전에 입주자 자격요건,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발요강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주자를 선발함에 있어 민통선정착마을조성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자가 입주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진동면, 군내면, 진서면, 장단면 지역에 연고를 갖고 있는 자
2. 입주할 주택을 자기부담으로 건축할 능력이 있는 자
3. 영농을 할 여건을 갖춘 자
4. 신원이 확실하고 국가관이 투철한 자

제11조(입주자 심사) 위원회에서는 입주 신청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면접 등의 방법으로 엄격하게 심사하여 선발 하여야 하며 심사는 비공개로 한다.

제12조(분양계획 수립등) 주택용지의 분양시기 및 분양방법, 분양가격이 포함된 분양계획과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정착촌 입주가 완료될 때 까지 효력을 가진다.

"지구촌을 일터로, 세계인을 친구로"

육 군 제 1570 부 대

우편: (413-859)경기파주광탄신산리 사109-1호/ 전화: (0348) 945-5833 대위 김광일/ 전송:

문서번호 : 작민 37330 - 99 - 1258
(현제 114호)

시행일자 : 1998. 3. 9 ()

받 음 : 파 주 시 장

참 조 : 지 적 과 장

결재	시 장	지 시
접수	일자 98. 3. 10 시간 : 번호 988	결재·공람 부대장 주장 과장 계장
처리과	지적과	
담당자	김광일	

제 목 : 민통선 북방지역 정착촌조성 군사협의 의뢰 중간 회신

1. 관련근거

가. 파주건설 1360-3781 정착촌 변경 군사협의 의뢰

나. 3군사 작계 37338-51 정착촌 조성지역 보호구역 변경 승인 지시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 귀청에서 협의의뢰한 민통선 북방지역 정착촌 조성

군사협의건에 대한 중간 회신을 불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불 임 : 검토의견 1부, 끝.

육 군 제 1570 부 대

작전참모 전결

검 토 의 건

■ 협의내용

요 청 지	규 모	사 입 기 간	내 용
파주시 진동면 728번지(이장포) 일원	3만평	'98~99(2년)	정착촌 조성

■ 검토의견 : 군사대비시설 보강 조건부동의 수용가능

- 보호구역 변경승인 : 통제 → 제한보호구역('98. 3. 1일부)국방부
- 사단 1차 검토의견 : 조건부동의 수용가능
 - 민간인 통제 / 안전대책강구 (지뢰지대 철조망설치 : 윤행 2단3열)
 - 통제초소(진진교)전투시설보강 : 자동바리케이트(2)
 - 훈련장 통제 / 관리시설보강 : 야외강의장, 화장실, 훈련장 통제 막사신설
 - 인접포병훈련장 / 위험성 교탄훈련장 일대 소음대비 방음벽 설치.

※ 파주시청 정착촌조성 세부설계도 / 도면 완료후 사단과 재협의하
합의각서 작성후 시행

민통선 북방 정착촌 조성 기본 계획

추진배경

- 파주시 민통선 북방 지역에는 대성동(비무장지대)와 군내면에 통일촌이 조성되어 148가구 715명이 입주하여 영농생활을 하고 있는 반면
- 장단면, 진동면에는 입주가 되지 못해 724가구 2,000여명 실향민들은 73년부터 10~25km의 원거리 출입영농을 하고 있음.
- 이들 실향민들은 입주 영농을 위해 청와대, 국방부등 관계기관에 입주 영농을 위하여 수차례 청원을 한바 있어
- 실향민의 오랜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정부의 정책적 배려하에 입주영농을 위한 정착촌 조성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함.

I. 정착촌 조성의 필요성

- 세계 유일의 분단 현장인 휴전선 접경에 순수한 실향민들의 손으로 정착촌 마을을 조성하므로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승리와 한국통일의 자신감을 세계촌에 과시
- 6·25이후 원치않은 유랑 생활을 하고 있는 파주 거주 실향민 1세대(5천여명)의 아픔을 해소함.
- 원거리 출입영농과 영농시간 제약으로 입는 영농부담을 1/2이상 격감 시키는 효과 제고
- 북측에 국가 발전상을 과시 하므로서 대 심리전 증강 효과와 국민에게 국가안전 보장에 대한 자신감 고취

II. 정착촌 조성 계획

-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728번지 일원
(자연부락명 : 이장포)

입지조건

- 전통 농촌마을 조성 예정지인 진동면 동파리(이장포)는 휴전선으로부터 6.5km, 남한방개선으로 부터 4km 남쪽에 위치한 6·25 사변전 주민들이 거주했던 지역(자연부락명 : 이장포)으로,
- 동 예정지는 임진강 초평도 건너편에 위치하여 국도 1호선 및 전진교를 이용하여 진입이 용이함.
- 주변 지형은 임야로 둘러 쌓여있고, 택지조성 예정지로 지형이 완만한 지역으로 주택 부지로서는 비교적 양호한 편임.

- ☐ 택지조성면적 : 100,000m²(30,000평)

☐ 사업계획

- 택지조성 : 30,000평
- 주택건설 : 60동
- 부대시설 : 다목적회관, 공동창고, 농산물직판장, 간이상수도, 오수정화시설, 놀이터, 소공원등

- ☐ 사 업 기 간 : '98 ~ '99 (2년)

- ☐ 소요 사업비 : 9,500백만원 (지원 6,740, 자부담 2,750)

☐ 사 업 주 체 :

-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 파주시
- 주택건설 : 입주농가

